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이 산업자원부령 제183호(02.9.28)로 개정·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 제도연구실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p>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 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p> <p>1. 2. (생략)</p> <p>3. 다음 각목의 <u>다중이용시설</u>에 설치하는 용량 20킬로와트이상의 전기설비</p> <p>가. (생략)</p> <p><신설></p> <p>나. ~ 사. (생략)</p> <p>③ (생략)</p>	<p>제3조(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 <u>다중이 이용하는 시설</u> -----</p> <p>-----</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u></p> <p>다. ~ 아. (현행 나목 내지 사목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6. 7. (생략)</p> <p>② (생략)</p>	<p>제13조(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①</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5의2. <u>법 제6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u></p> <p>6. 7.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등) ①·② (생략)</p> <p>③ 법 제61조제4항 및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p>	<p>제30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p>

현행	개정
<p>에 의하여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공사계획에 대하여 <u>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확인</u>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u>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감독</u>을 받도록 할 것</p> <p>2. (생략)</p> <p>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 ① ~ ④ (생략)</p> <p>⑤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u> <u><신설></u></p>	<p>----- ----- -----</p> <p>1. -----<u>전기안전관리자</u>----- <u>전기안전관리자</u>----- -----</p> <p>2. (현행과 같음)</p> <p>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전기안전관리자</u>-----</p> <p>제31조의2(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① <u>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u></p> <p>1. <u>발전기의 출력이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출력보다 낮으나 사용상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2. <u>송·수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보호울타리 등이 시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u></p> <p>3. <u>공사계획을 인가받거나 신고한 전기설비 중 교대성·예비성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주된 설비가 전기의 사용상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② <u>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임시사용기간내에 임시사용의 사유를 해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임시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시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u></p> <p>③ <u>안전공사는 법 제6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한 때에는</u></p>

현 행	개 정
<p>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④ (생략)</p> <p>제34조(검사결과와 통지) 안전공사는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u><신설></u></p> <p>제35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전기판매사업자(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공사에 점검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공사를 말한다. 제38조를 제외하고 이하 같다)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일반용전 기설비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2월이내 2.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전후하여 2월이내 <p>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된 용량 2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p> <p>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게임제공업시</p>	<p>그 허용사유·사용기간·사용범위 등을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검사필증에 기재하여 사용 전검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p> <p>⑤ (현행 제4항과 같음)</p> <p>제34조(검사결과와 통지 등) ① ----- -----별지 제28호의2서식----- -----내용·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p> <p>② 안전공사는 제31조제4항 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기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35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전에 받아야 한다.</p> <p>② 사용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30호서식의 사용전점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③ 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사용전점검필증을 점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p>

현행	개정
<p><u>설·노래연습장,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그밖에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u></p> <p>다. 가목 및 나목에 정하는 것외의 설비는 2년이 되는 날</p> <p>3. 정기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의 재점검은 다음 각목에 해당 되는 날</p> <p>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에 부적합한 경우 실시하는 2차점검은 부적합 통지를 한 날부터 2월이내</p> <p>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 실시하는 3차점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조치기간이 경과한 후 1월이내</p> <p>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물을 증축 또는 개축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계법령의 허가 신청·등록신청·신고 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점검을 받아야 한다.</p> <p>1.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p> <p>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게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p> <p>3.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유흥주점</p> <p>4.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p> <p>5.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p> <p>③ 시·도지사는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수리명령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가 법 제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급 정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 점검결과 기술</p>	<p><u>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현 형	개 정
<p>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p> <p>⑤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함에 있어서 당해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시설물의 전기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⑥ 법 제6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p> <p>⑦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안전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한 경우 점검을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35조의2(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p> <p>1. 다음 각목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1년이 되는 날</p> <p>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다만, 용량 2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가 설치된 시설에 한한다.</p> <p>나.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p> <p>다.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게임제공업시설·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시설·노래연습장</p> <p>라. 청소년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p> <p>마.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다만,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중 경로당을 제외한다.</p> <p>바.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p> <p>2. 제1호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p> <p>② 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p>

현행	개정
<p>제38조(점검업무의 위탁승인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점검업무위탁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탁이유서 2. 위탁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p>② 법 제6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승인을 얻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위탁기간의 변경등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점검업무위탁변경승인신청서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업무의 위탁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위탁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제40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등) ①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전기수용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략) <p><신설></p>	<p>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 공급전압, 계약전력 등 전기를 공급받는 자에 관한 자료 2. 일반용전기설비의 휴지, 폐지, 전기의 재공급, 계약전력의 증감 등 전기공급내용의 변경자료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공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안전공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제38조(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p>②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3서식의 전기안전점검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4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 -----전기안전관리자-----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휴지중인 다음 각목의 전기설비

현행	개정
<p>② 법 제7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용량 1천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500킬로와트미만인 전기설비를 말한다. 다만, 법 제7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는 전기설비는 용량 500킬로와트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미만인 전기설비로 한다.</p> <p>③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안전관리담당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되, 전기설비별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보조인력 및 직무범위는 별표 12와 같다.</p> <p>④ 법 제7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는 그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p>	<p>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p> <p>나. 심야전력 전기설비(전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 한한다)</p> <p>다.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p> <p>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으로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전기설비에 한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우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3.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2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p>〈삭제〉</p>

현 행	개 정
<p>비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 될 수 없다. 다만, 우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에 한하여 1천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1인의 전기안전관리담당자가 할 수 있다.</p> <p>⑤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휴지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통보를 한 전기설비 2. 사용을 중지한 심야전력 전기설비 3. 사용을 중지한 농사용 전기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p>⑥ 전기안전관리담당자는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여야 한다.</p> <p>제41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법 제73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의 업무범위는 별표 13과 같다</p> <p>제42조(전기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등록 및 신고)</p> <p>①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p>	<p><삭 제></p> <p><삭 제></p> <p>제41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7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법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이하 "개인대행사"라 한다)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용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1천5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2. 개인대행사 :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서 전체용량의 합계가 80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 <p>제4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p>

현 형	개 정
<p>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법 제7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사업자등록증 사본</p> <p>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p> <p>다. 자본금 또는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p> <p>라. 소속기술인력에 대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p> <p>마. 장비명세서</p> <p>2. 개인대행자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사업자등록증 사본</p> <p>나.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p> <p>다. 장비명세서</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5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고 또는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3조(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 ① 기업활동규제 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이하 "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14의 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을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p>	<p>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기설비 :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p> <p>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p> <p>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 이하의 전기설비</p> <p>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p> <p>2.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p> <p>제4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①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p> <p>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토목·기계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p> <p>2.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토목·기계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p> <p>3. 당해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자</p> <p>②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전기설비</p>



현행	개정
<p>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본금 또는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속기술인력에 대한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5. 장비명세서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수탁범위·운영방법 그밖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4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자격의 완화)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이 곤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의 범위와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사용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의 전기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p>가.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설비용량 300킬로와트이하의 전기설비</p> <p>나.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설비용량 500킬로와트이하의 전기설비</p>	<p>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 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p> <p>③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4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은 별표 12와 같다.</p> <p>②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3.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4.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및 그 기록의 보존 5.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무 <p>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p> <p>나.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p>

현행	개정
<p>다. 도서 또는 벽지에 설치된 댐높이 10미터이하의 소수력 발전소로서 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인 전기설비</p>	
<p><신설></p>	<p>제44조의2(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 등) ① 대행</p>
	<p>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도지사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p> <p>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 1인과 개인대행자 1인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13과 같다.</p>
<p>제45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p>	<p>제4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p>
<p>① 법 제73조제1항·제6항 및 이 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①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1.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국가기술자격증</p>	<p>가.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p>
<p>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경력증명서(경력증명서는 해당자에 한한다) 및 재직증명서와 그 증빙서류</p>	<p>나.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그 증빙서류</p>
<p>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 이수증(제4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다.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라.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관리대행기관에 한한다)</p>	<p>라. 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p>
<p>2.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2. 해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p>
<p>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국가기술자격증</p>	<p>가.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p>
<p>나.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필증 사본</p>	<p>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대리자 지정서(후임자의 선임없이 해임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다. 해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p>
<p>②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p>	<p>② 법 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p>

현행	개정
<p>관리담당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p> <p>2.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 및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서류(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에 한한다)</p> <p>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6조(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교육등) ①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법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을 말한다)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에 소속된 기술인력은 법 제7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에 정하는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관련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서에 한한다)</p> <p>2.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과 개인대행자에 대한 별표 13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별 가중치 변동현황을 기재한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p> <p>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 간 담당 전기설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대행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8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46조(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법 제73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그 소속기술인력을 말한다)는 법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5의 규정에 의한 교육방법에 따라 전력기술인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전기관련기관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별표 15의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전력기술인단체의 장 또는 전기관련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
<p><신설></p>	<p>제46조의2(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① 법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소속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5. 장비명세서 <p>② 법 제73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법 제73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 장비명세서
<p><신설></p>	<p>제46조의3(변경등록 등) ① 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명 또는 상호 2.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현 행	개 정
<p><u>〈신 설〉</u></p> <p><u>〈신 설〉</u></p> <p>제51조(수수료등) 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u>검사수수료</u> 및 <u>교육비</u>는 <u>별표 17</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p> <p><u>〈신 설〉</u></p>	<p>3. <u>대표자(등록자에 한한다)</u></p> <p>4. <u>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형사업자의 소속기술인력</u></p> <p>② <u>법 제73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u></p> <p><u>제50조의2(보고) ① 법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7과 같다.</u></p> <p>② <u>법 제9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기술인단체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별표 18과 같다.</u></p> <p><u>제50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법 제9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할 중대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및 통보기한은 별표 19와 같다.</u></p> <p>② <u>법 제9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사고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비영리법인인 전기관련기관 또는 단체로서 별표 20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u></p> <p>제51조(수수료등)----- <u>검사수수료·전기안전점검 수수료·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필증발급수수료</u>----- <u>--별표 21-----</u></p> <p><u>부 칙</u></p> <p>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3차점검을 실시한다.</p>

다음호에 계속됩니다